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0 선고 2018가합523568 판결 [계약보증금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9. 11. 20 선고 2018나206439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0 선고 2018가합523568 판결

전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연제현, 홍주혜

피고B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노만경, 이은숙

변론 종결2018. 8. 22.

판결 선고2018. 10.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26,003,725원 및 이에 대한 2017.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8.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원고가 수급받은 'D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일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C에 하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C는 2016. 8. 11. 피고와 피고가 C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이행을 보증하기로 하는 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C는 2017. 4. 26., 2017. 6. 15., 2017. 6. 29.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C는 각 변경계약 체결일 다음날 피고와 변경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한 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후 C가 경영난으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2017. 7. 31.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C에게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잔여공사에 관하여 주식회사 E과 새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로 인하여 526,003,725원 상당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이 사건 공사 이행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526,003,725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증금 526,003,72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면책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C에 대하여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에 관한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은 아래와 같고, 이에 의하면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보증금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급보증 면제사유가 없는 한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한다.

가)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은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할 의무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 대해 계약이행보증을 할 의무를 정하면서(제1항 본문),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항 단서).

나)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2항은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공사대금 지급의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잔여기간, 위탁사무의 기성률, 잔여대금의 금액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제10항은 '제1, 2항 단서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닌 한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에 대한 원사업자의 보증금 청구권은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는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단서에 관하여 '원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공사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0 이상을 받은 경우'이다.

3) 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A0 이상이었으나 2016. 12. 23. A-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당시에는 공사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가 있었으나 2016. 12. 23. 위 면제사유가 소멸하였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C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0항에 따라 C의 계약이행보증에 대한 보증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2항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의 소멸'은 단순히 면제사유가 유효하게 존재하였다가 이후 변경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면제사유가 없었던 것 또는 사후적인 사정으로 소급적인 무효가 되거나 또는 그와 동일·유사한 상황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면제사유가 유효하게 존재하였던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2항은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사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가 유효하게 존재하다가 사후에 소멸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소멸'의 사전적 의미는 '사라져 없어짐'으로써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음'이 아니라 '존재하였다가 후에 없어짐'을 뜻한다.

(2)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원사업자의 보증 대상은 '공사대금 지급'으로써 개념상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공사대금을 의미하고, 이미 발생하여 지급이 완료된 공사대금은 보증 대상이 아니므로,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2항에 의하더라도 이미 지급 완료된 부분까지 소급하여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추가로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다.

(3) 하도급법의 입법취지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와 수급사업자의 공사이행보증 의무는 상호 대가관계를 가지는 의무이므로, 공사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가 사후에 소멸하여 공사대금 지급이 보장되지 않음에도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계속 면제시키는 것은 위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5) 또한 원고는,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위하여 보증기관을 물색하였으나 C의 사정으로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못하였고, C가 이 사건 공사를 이행하지 못하고 공사 포기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정산을 마침으로써 원고가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음에도 피고가 계약이행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가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기 이전에 이미 원고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가 소멸한 점에 비추어 C의 사정으로 원고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대등한 지위를 보장하려는 하도급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피고의 계약이행보증금 지급거절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황정수

판사하세용

판사목혜원